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36

2025년 9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3. **상정일자** :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9월 3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가.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광역치매센터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

나.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

2. 주요내용

가. 위탁의 취소 시 수탁기관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보며,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안 제8조)

나.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장은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안 제9조)

다. 그 밖의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치매관리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 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2025. 6. 5. ~ 6. 2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김선영 (☎ 2133-7589)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개정(안)의 취지

○ 동 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광역치매센터 조례”라 한다)를 **관련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부합하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 내용별 검토

가.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를 수탁재산으로 간주하는 규정 관련 (안 제8조제3항 관련)

1) 개정(안)의 내용

○ 동 개정(안)은 현행 ‘광역치매센터 조례’ 제8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수탁기관’이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에 대한 ‘수탁재산 간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생 략)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게 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재산 ---------- ----------. <삭 제>

2) 검토의견

○ 헌법 제37조제2항 및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에 따르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존재**해야함. 즉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해야함.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그런데, 현행 ‘광역치매센터 조례’ 제8조제3항의 “수탁기관이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에 대한 수탁재산 간주 규정”은 법률의 조례에 대한 위임 없이 **‘수탁기관’의 헌법 제23조상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사실상 ‘수용[1]’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법제처에서 역시 ‘2023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례집(p.76)’에서 동 조문이 “관계 법령의 근거 없이 수탁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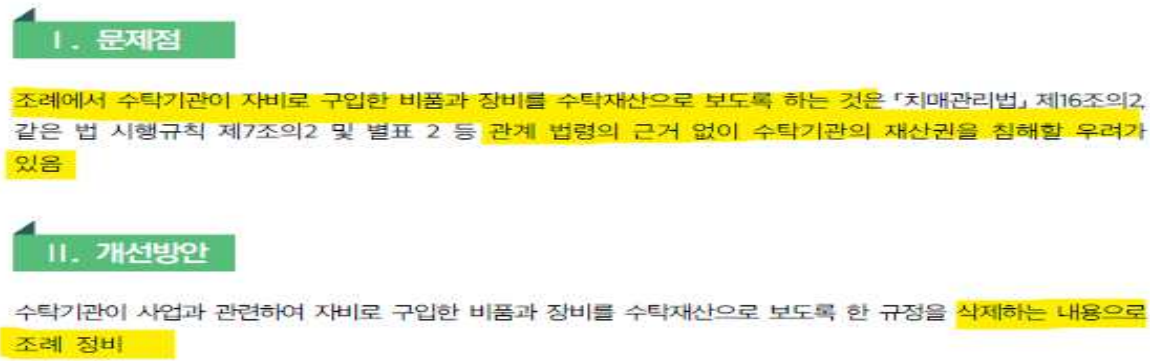

1) **수용**(재산권의 박탈), **사용**(박탈에 이르지 않는 일시적 이용), **제한**(수용에 이르지 않지만 소유자 등의 사용, 수익을 제한)

나.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장은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안 제9조)

1) 개정(안)의 내용

○ 동 개정(안)은 현행 ‘광역치매센터 조례’ 제9조제2항을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상의 ‘광역치매센터장’ ‘인력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비 지원 등) ① (생 략)	제9조(운영비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광역치매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장은 수탁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 2일(16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르면,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하 “각 호”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별표2〕에서는 '광역치매센터'장의 '배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으며, '동 센터장 기준'을 '사무국장' 기준과 함께 체계적 해석하면, 상위법령은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근의무'를 두고자 "상근으로" 라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나, **'광역치매센터장'에 대해서는 "1명을 둔다"라는 규정만 명시할 뿐, 별도의 "상근으로"라는 규정을 두지 않아 '상근 또는 비상근'을 모두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3.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1) 광역치매센터장: 1명을 둔다. 다만,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 2일(16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2) 사무국장: 상근으로 사무국장 1명을 둔다. (이하 "생략")

○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p.34)' 에 따르더라도, **'광역치매센터의 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음이 안내**되어 있음.

◎ 광역치매센터장

- (상근센터장) 타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으며 광역치매센터장으로만 상근하는 경우, 매월 1,093,000원의 5배 범위 안에서 월지급액을 정하여 연봉계약이 가능함 (단,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중 상여수당을 제외한 수당지급 및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월지급액은 계약연봉의 1/12로 산정)
  ※ 정신건강증진센터장과 겸직 시 중복하여 월급을 지급할 수 없으며, 월급은 광역치매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 중 선택하여 지급해야 함
- (비상근센터장) 주 2일(16시간) 근무하는 비상근 센터장의 경우 매월 2,116,000원 범위 내에서, 주 3일(24시간) 근무하는 비상근 센터장의 경우 매월 3,139,000원 범위 내에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퇴직금 없음)
  ※ 정신건강증진센터장과 겸직하더라도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며 해당 근무일에 대한 수당은 광역치매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 중 선택하여 지급해야 함

○ 그런데, 현행 조례 제9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의 ‘2025년 치매정책 사업 안내(p.33)’ 상의 “광역치매센터장은 수탁기관의 **여건에 따라 비상근 근무가 가능**하며, 이 경우 주 2일 (16시간) 이상 근무” 문구를 **‘반대해석’하여 ‘상근이 원칙’이고 ‘비상근이 예외임’을 명시**한 것인데,

○ 현행 조례 제9조제2항은 해석에 따라 도출되는 “상근 원칙”만을 명시하고, 그 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에서 명시하고 있는 **“겸직 가능여부 및 주당 필수근무일 및 필수근무시간”은 누락**하고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제9조제2항 누락 사항을 보완하여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대로 조례에 재기재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방향성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 다만, 동 시행규칙 〔별표2〕는 조례보다 상위법령인 바, 그 법적 효력이 ‘조례’의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함. 따라서, 동 조문을 조례에서 ‘삭제’하지 않고, 단순히 상위법령 내용 그대로 재기재 할 실익이 있는 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2022년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법제처) (p.10)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자치법규는 제정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

다. 그 밖의 자구 수정 관련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 등)

1) 개정(안)의 내용

○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의 '관련 상위법 조문' 인용을 정확하게 하고, 그 외 '센터 명칭'을 올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또, 위탁기관(서울시)과 수탁기관(병원급 의료기관)의 용어 사용을 올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 ---------- --------- 광역치매센터---- ---------- ----------.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생 략) ② 치매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광역치매센터---------- ---------- ----------.
제5조(수탁기관 선정) ① ~ ③ (생 략) ④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위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은 「서울특별시	제5조(수탁기관 선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광역치매센터 수탁기관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	----------.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치매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 광역치매센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생 략)	제8조(위탁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게 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 재산 ----------.

2) 검토의견

○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상 '광역치매센터'와 관련된 조문은 법 제3조가 아니라 법 제16조의2임에 따라, 동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 외 '센터 명칭' 역시 단순히 '치매센터'라 하지 않고 '광역치매센터'로 분명히 하는 것 역시 타당성이 존재하다고 사료됨. 아울러,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필요한 바, 이를 올바르게 '위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로 개정한 것 역시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라. (추가검토의견) 이원화된 서울특별시 치매 관련 조례 통합 필요성 및 현행 조례의 추가적인 정비 필요성

① 이원화된 서울특별시 치매 관련 조례 통합 필요성

○ 현재 서울시의 치매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음.

○ 그런데, 2024년 제정을 통해 현재 **치매 관련 일반 조례인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광역치매센터'만을 위한 조례가 존재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현재 타 광역지자체(14곳)도 이미 '치매 관련 일반 조례'에 '광역치매센터' 관련 내용을 하위 조문으로 구성하여 통합 운영중**이며,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3곳)만 현재 '치매 일반 조례'와 '광역치매센터 조례'로 이원화 하여 운영중임.

- (통합 조례 운영) (14곳)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 (이원화된 조례 운영) (3곳) : 서울, 전북, 제주

○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에서도 ‘개정방식’ 또는 ‘제정방식’의 선택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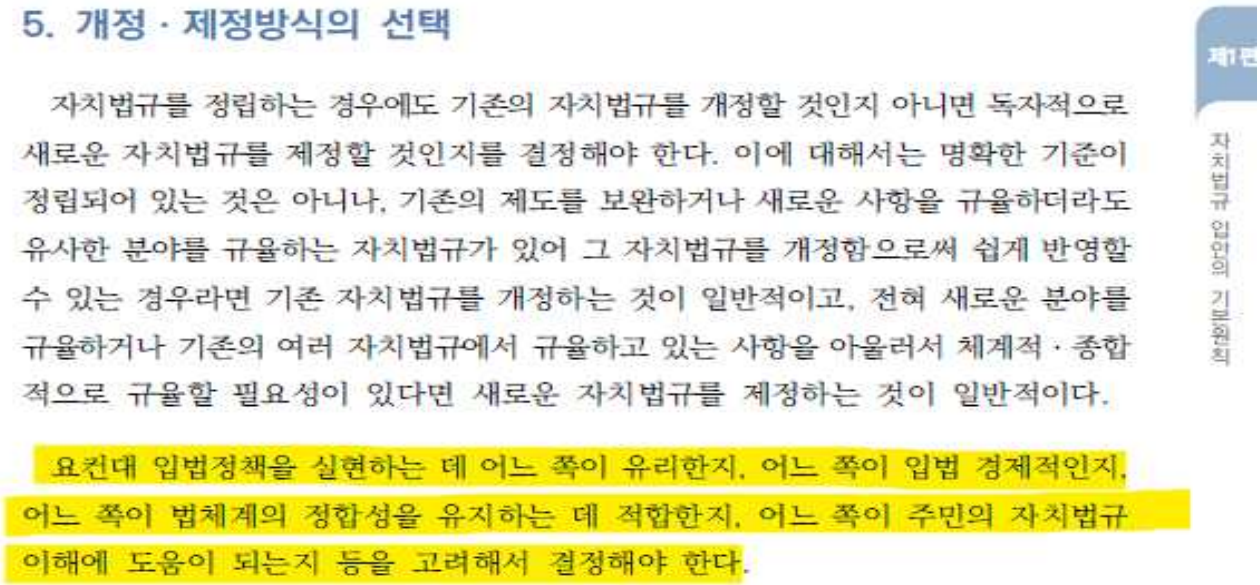

5. 개정 · 제정방식의 선택

자치법규를 정립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더라도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자치법규가 있어 그 자치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혀 새로운 분야를 규율하거나 기존의 여러 자치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서 체계적 · 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컨대 입법정책을 실현하는 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어느 쪽이 입법 경제적인지, 어느 쪽이 법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지, 어느 쪽이 주민의 자치법규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제1편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 따라서, ‘입법의 경제성’, ‘법령 체계의 정합성’, ‘주민의 이해 편의성’과 ‘타광역 지자체의 입법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치매관리법」이라는 같은 법령체계 하에 있는 두 개의 조례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입법 경제성’이 있는지 또 ‘법령 체계의 정합성’과 ‘주민의 이해 편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② 현행 조례의 추가적인 정비 필요성

○ 동 개정(안)은 그 제안 이유와 개정 조문을 종합하여 검토할 때, 그 취지와 목적이 현행 조례의 입법체계를 올바르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인데, **개정(안)에 누락 되어 있는 추가 정비가 필요한 조문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함께 필요하다고 사료**됨.

ㅇ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제9조(운영비 지원) 관련**

- 치매관리법 1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동 센터'는 의료법상 '병원급'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그런데, **동 조례 제4조제1항은 '필요한 경우' '시장'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특별한 조문'을 명시**하고 있음.

- 법령에서 '병원급 기관'에 위탁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조례에서 이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를 한정하여 '시장의 선택 재량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법령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다만, 법 체계상 〔본문 - 단서〕 또는 〔제1항 - 제2항〕 규정과 같은 체계를 활용하여 **'일반적인 또는 원칙적인 위탁 규정'을 먼저 명시한 후 그 후 '특별한 예외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즉, 현행 조례 제4조는 '위탁의 일반적 기준'은 명시되지 않은 채 '특별한 기준'만 제1항에 배치하여 체계가 맞지 않음.

- 아울러, **현행 조례 제4조는 현행 조례 제9조 제1항과 연동**되는데, **현행 조례 제4조에서 그 대상을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등'으로 한정하여 제9조제1항의 '예산지원 대상' 역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한정되었음.** 이는 **「치매관리법」 제18조가 비용의 지원**을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광역치매센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과 **그 범위가 다소 차이가 있음.**

○ **제6조 (수탁기관의 의무) 및 제8조 (위탁의 취소) 관련**

-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수탁기관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함께 "수탁기관의 **'권리'**를 양도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런데, **"위임 또는 위탁"은** 행정주체 (서울시)의 "권리"가 아니라 **행정청(서울시장)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 단체 등에게 맡기는 것임**. 따라서, **'재위탁' 역시 '권한의 위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바, '권리'를 '재위탁'한다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 p. 487 참조〉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다는 것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단체 등에 맡기고, 이를 받은 수임자·수탁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 관련 규정의 표현방식

위탁 관련 규정은 "권한의 위탁", "업무의 위탁", "사무의 위탁"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무의 위탁"과 관련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권한의 위탁"보다는 "업무의 위탁" 또는 "사무의 위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현행 조례 제6조제3호는 **“수탁기관의 의무”로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수탁기관이 제6조(시장의 지시사항 위반 포함)를 위반한 경우” 그 위탁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즉, 현행 조례 제8조제1항제1호는 ‘위탁의 취소’ 라는 ‘침익적 처분’의 요건으로 ‘시장의 지시사항 위반’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런데, **‘법령의 입안을 심사하는 기준’**은 ‘위헌 심사 기준’ 인 ‘최소한의 명확성’이 아닌 **‘최대한 명확성’**이라는 점에서, **또 ‘침익적 처분’에 대한 ‘명확성 원칙’ 위반 심사 강도는 ‘수익적 처분’에 비해 ‘엄격’하다는 점**에서,

- 현행 조례 제8조제1항제1호는 **단순히 ‘시장의 지시 사항’ ‘위반’을 그 요건으로 명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그 ‘위탁 취소 요건’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 p. 40 참조〉

2) 법령 입안·심사 시 고려 사항

가) 명확성의 정도

위헌 심사기준으로서의 명확성의 원칙은 "최소한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나 법령을 입안하고 심사하는 기준의 관점에서는 가능하면 "최대한 명확성"을 지향해야 한다. 즉 법령은 일단 입법되면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갖고 실효적으로 집행되어 국민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법령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법자는 법령의 의미를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령 규정의 의미에 대한 분쟁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령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규율 내용의 성격'이나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에 따라 적절하게 입안·심사의 강도를 판단해야 한다. 어떠한 규정이 침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특히 형사법이나 조세법에서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제10조 (준용) 관련

- 원칙적으로 하위법인 조례에서 **관련 모든 상위 법령**을 **'포괄적'으로 준용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왜냐하면, 상위법령은 당연히 지방자치법 제28조 본문의 '상위법령 우위의 원칙'에 따라 조례보다 효력 상 우위에 있기 때문임.

- 아울러, 예외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인 경우에도 그 위임의 "범위와 한계 안에서" '위임의 법령'과 동위의 '관련 법령'을 준용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을 뿐, **'위임 범위와 한계' 없이 '포괄적으로' 관련 모든 '법령'을 준용하는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p. 421 참조〉

4) 준용 규정 시 유의 사항

위에서 언급한 사항 외에도 준용 규정을 둘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도록 한다.

가) 일반적으로 하위 자치법규에서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를 준용할 수는 없다. 다만,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에서 위임을 받아 정하는 위임입법의 경우 그 위임의 범위와 한계 안에서 위임(재위임인 경우에는 그 본래의 위임)한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와 동위(同位)의 관련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는 있다. 상위 자치법규에서는 하위 자치법규를 준용하지 않는다.

다) 어떤 규정을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 조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자치법규 전체를 준용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준용 방식은 준용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 준용 규정을 두기보다는 대상 조문을 특정하여 준용하도록 한다.

3 종합의견

○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를 수탁재산으로 간주하는 규정 관련 (안 제8조제3항 관련)**

- 현행 ‘광역치매센터 조례’ 제8조제3항의 “수탁기관이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에 대한 수탁재산 간주 규정”은 법률의 조례에 대한 위임 없이 ‘수탁기관’의 헌법 제23조상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 하고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장은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안 제9조 관련)**

-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제9조제2항 누락 사항을 보완하여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대로 조례에 재기재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방향성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 다만, 동 시행규칙 〔별표2〕는 조례보다 상위법령인 바, 그 법적 효력이 ‘조례’의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함. 따라서, 동 조문을 조례에서 ‘삭제’하지 않고, 단순히 상위법령 내용 그대로 재기재 할 실익이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그 밖의 자구 수정 관련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 등)**

-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상 ‘광역치매센터’와 관련된 조문은 법 제3조가 아니라 법 제16조의2임에 따라, 동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 외 ‘센터 명칭’ 역시 단순히 ‘치매센터’라 하지 않고 ‘광역치매센터’로 분명히하는 것 역시 타당성이 존재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명칭을 ‘위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로 개정한 것 역시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 **이원화된 서울특별시 치매 관련 조례 통합 필요성 및 현행 조례의 추가적인 정비 필요성**

① 이원화된 서울특별시 치매 관련 조례 통합 필요성

- 현재 서울시의 치매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음.

- 그러나, ‘입법의 경제성’, ‘법령 체계의 정합성’, ‘주민의 이해 편의성’과 타 광역 지자체의 입법례(13곳)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치매관리법」이라는 같은 법령 체계 하에 있는 두 개의 조례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입법 경제성’이 있는지 또 ‘법령 체계의 정합성’과 ‘주민의 이해 편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② 현행 조례의 추가적인 정비 필요성

- 동 개정(안)은 그 제안 이유와 개정 조문을 종합하여 검토할 때, 그 취지와 목적이 현행 조례의 입법체계를 올바르게 재정비하고자 하

는 것인데, 개정(안)에 누락 되어 있는 추가 정비가 필요한 조문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추가 보완이 함께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제9조(운영비 지원) 관련**

▶ 현행 조례 제4조는 상위법령상의 '위탁의 일반기준'은 명시하지 않은 채 '특별한 기준'만 명시하여 체계가 맞지 않음.

▶ 현행 조례 제9조는 현행 조례 제4조와 연동되어 '예산지원' 대상 역시 상위법령과 그 범위를 다소 다르게 명시하였다고 사료됨.

- **제6조 (수탁기관의 의무) 및 제8조 (위탁의 취소) 관련**

▶ "위임 또는 위탁"은 행정주체 (서울시)의 **"권리"**가 아니라 행정청(서울시장)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 단체 등에게 맡기는 것임. 따라서, '재위탁' 역시 '권한의 위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바, **'권리'를 '재위탁'한다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현행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위탁의 취소' 라는 '침익적 처분'의 요건으로 '단순히' 포괄적인 '시장의 지시사항 위반'을 명시한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함.

- **제10조 (준용) 관련**

▶ 원칙적으로 **하위법인 조례에서 관련 모든 상위 법령을 '포괄적'으로 준용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왜냐하면, 상위법령은 당연히 지방자치법 제28조 본문의 '상위법령 우위의 원칙'에 따라 조례보다 효력 상 우위에 있기 때문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 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36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광역치매센터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

나.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

2. 주요내용

가. 위탁의 취소 시 수탁기관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보며,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안 제8조)

나.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장은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안 제9조)

다. 그 밖의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치매관리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6. 5. ~ 6. 2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김선영 (☎ 2133-758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치매관리법」 제3조”를 “「치매관리법」 제16조의2”로, “치매센터”를 “광역치매센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치매센터”를 “광역치매센터”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치매센터 위탁기관”을 “광역치매센터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센터”를 “광역치매센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재산(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을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장은 수탁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 2일(16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받아 운영 중인 광역치매센터의 장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 ---------- -------- 광역치매센터---------- ----------.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생 략)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치매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광역치매센터---------- ----------.
제5조(수탁기관 선정) ① ~ ③ (생 략)	제5조(수탁기관 선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위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	④ ---------- ---- 광역치매센터 수탁기관 - ---------- ----------.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치매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 -------- 광역치매센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생 략)	제8조(위탁의 취소) ① (현행과 같

	음)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게 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재산 ----------. <삭 제>
제9조(운영비 지원 등) ① (생략) ② 광역치매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운영비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장은 수탁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 2일(16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광역치매센터의 장의 근무방식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김선영 (☎ 2133-7589)